

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6조(계약기간) ① 계약기간의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인정서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단, 이용기간의 연장
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 사정한 후, 이용자(보호자)와 협의를 거쳐 연장 할 수 있다.

②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한다. 단, 사망 등 불가피한 경
우 예외로 한다.

제7조(계약의 목적)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의 내용과 절차 등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
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안에서 건정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
데 있다.

제8조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 ①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
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에 의거, 방문요양 급여비용
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.

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다.

1. 일반 이용자 15%

2. 기초생활수급자 0%

3. 감경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제2조
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%까지 감경된 금
액으로 한다.

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외의 '외출 및 병원 이용
시 교통수단 이용료', '기호품 등 일상용품 구입', '간식', '외식비용 발생', '미용을 위한
비용'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 ①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 상태를
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에게 확인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, 센터는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
리에 의무를 다한다.

② 신원인수의 권리,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신원 인수방법

1)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(가정) 또는 센터 이용자(보호자)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
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.

2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
1)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
2)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
3) 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

4)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

3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
1) 서비스 전 이용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(본인 부담금)를 부담하 여야 한다.(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).

단,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이용자,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.

2) 방문요양 업무 시 이용자(보호자 또는 보증인)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센터에 묻지 않는다. 또한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가 급적 지원하지 않으며, 이용자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 러운 사고 발생 시 센터는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.

3)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 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책무 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판손,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.

4)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 할 의무가 있다.(해외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 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)

5)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
6)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이용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(이용자의 사망, 시설입소, 타 지역 이사(거 주지 변 경) 병원입원, 해외출국)가 아닌 한, 계약기간 동안 타 기관으로 이용자를 이동하지 않는다.

4. 센터의 이용자 관리의무

1) “이용자”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(단,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성비 스를 제공하지 않는다)

2) “이용자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한다.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3)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.

4) 센터는 이용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.(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 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)

5) 이용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시 통제·안내한다.

제10(계약의 해제)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.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용자(보호자 또는 보증인)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,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2. 이용자(보호자 또는 보증인)가 종사자에게 성희롱, 성폭력 사건 발생 시,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 다.

3.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

성이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4. 3회 이상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5.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(보호자 또는 보증인)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
6. 이용자(보호자 또는 보증인)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7.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(보호자 또는 보증인)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
8.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이용자(보호자 또는 보증인)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